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036

발의연월일: 2022. 3. 31.

발 의 자:이종배·구자근·김선교

김성원 • 박완수 • 성일종

정우택 · 조명희 · 조수진

추경호 • 태영호 • 홍석준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한 기업(이하 "벤처기업등"이라 함)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임직원"이라 함)이 해당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중연간 5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이는 운영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벤처기업등이 성과급 등을 대신하여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우수인력을 유치하는경우가 많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통하여 벤처기업등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 및 물가 상승이 가속화되면서 벤처기업등의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활용하여 임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함으로써 벤처기업등의 재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5천만 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여 벤처기업등의 우수인력 유치를 지원하고 벤처기업등의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1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5천만원"을 "2억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
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① 벤처기업 또는 대통령령으	①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	
이 인수한 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 및 제16조	
의3에서 "벤처기업 임원 등"이	
라 한다)이 해당 벤처기업으로	
부터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	
치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	
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	
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	
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	
선택권(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	
터 부여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을 행사(벤처기업 임원 등으로	
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	
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	
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6	
조의4까지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이라 한다)	
중 연간 <u>5천만원</u> 이내의 금액	<u>2억원</u>
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	
지 아니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